

Q

당 현장은 재개발아파트 현장으로 현장 가운데로 도로가 나있어 부득이하게 보행자의 안전통로를 만들어야 할 상황입니다. 주로 현장 주변 주민과 학생들이 통행을 하지만, 저희 현장 근로자들도 통행하는 곳이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하려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또한, 현장 가운데 도로를 놓은 상태여서 차량과 보행자 뿐만 아니라 저희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수 또는 안전통제 요원을 전담 배치하려 하는데 이 인건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소속 및 하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하가 질의한 현장 주변의 주민이나 학생들이 주로 통행하는 안전통로 설치비용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신호수나 안전통제 요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

Q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과 관련하여, 법적 작성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이러한 건설현장에는 정직원, 현장채용직 직원, 여직원, 경비 등의 상용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협력업체 직원 및 일용직 근로자들이 있는데,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일용직 근로자수를 제외한 상용직 근로자수를 말하는 것인지요? 만약 그러하다면 상용직 근로자의 범위가 원수급인의 정직원, 현장채용직, 여직원, 경비 등과 협력업체 직원까지 모두를 포함하는지 문의드리며, 재해를 산정시 산정기준은 어떠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질문한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은 말씀하신대로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현장에 상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직원, 직영)와 일용근로자는 월 투입 총근로자를 근로일수로 나눌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나오므로 직원, 직영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상시근로자수 산정 인원과 합하면 됩니다. 그 인원이 100명이상이 되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 되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의 상시근로자수는 실인원의 근무여부로 결정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이나 재해율 산정방법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과는 틀림을 알려드립니다.

A

Q

저희 회사는 올해 환산재해율 0.57% 이하로 새로이 진입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안전 자율관리 선정업체 95곳 중에 포함되는지, 만약 포함이 된다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는지 문의드립니다.

A

재해율양호업체(각군별 환산재해율 순위가 10%이내인 업체)는 1군 한솔건설(주) 등 10개 업체, 2군 진흥기업(주) 등 20개 업체, 3군 (주)신성건설 등 82개 업체, 4군 신원건설(주) 등 213개 업체로 이와 관련하여 볼 때 귀사의 2003년도 환산재해율은 0.49%로, 재해율 양호 및 불량업체에 해당되지 않으며, 재해율 양호업체는 재해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FQ)시 가점(+)이 부여되고 2004. 7. 1. 부터 2005. 6. 30. 까지 1년간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각종 안전점검 및 지도감독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부여됩니다.

Q

당 현장은 아파트 공사 현장으로 계단 및 발코니 난간대 등을 OO업체에 재료비 5천만원, 노무비 3천만원 등 총 8천만원에 계약을 맺어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성은 설치 완료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매월 지급하고 안전관리비 2번 항목으로 사용하려 합니다. OO업체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해 현장에 반입한 자재는 OO업체의 창고에서 가져온 것으로 구입 및 임대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현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 1) 재료비 5천만원 전액을 2번 항목 안전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2) 가능하다면 기성청구서만으로 증빙 서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 3) 노무비의 경우 실사용한 노무비가 2천5백만원이고 당사가 OO업체에게 지급한 비용은 3천만원일 경우 2번 항목 안전시설비로 3천만원 사용이 가능한지?

A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바, 계단 및 발코니 난간대 등의 안전시설물을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안전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실제 투입된 비용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과 관련된 입증방법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계약서, 기성청구서, 세금계산서 등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로 사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